

**2021학년도
대학자체평가 결과보고서
(요약본)**

2021. 12.

예명대학원대학교

차 례

I. 자체평가 개요 -----	1
II. 평가 영역별 평가 지표 -----	4
III. 평가 결과 요약 ----- (이하 생략)	7
IV. 평가 영역별 세부 평가 결과 -----	10

[참고자료]

1. 예명대학원대학교 자체평가 기본계획 ----- 44
2. 예명대학원대학교 자체평가 규정 ----- 47

2021학년도

예명대학원대학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

I. 자체평가 개요

1. 평가 근거

가. 고등교육법 제11조의2(평가 등)

-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, 조직과 운영,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.

나.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(자체평가의 실시)

-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·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 제6조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와 학교의 장이 해당 기관의 교육·연구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자체평가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.

다.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제5조의2(자체평가)

- ①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·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
- ② 자체평가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라. 예명대학원대학교 자체평가 규정 제4조(평가시기 및 절차) 등

- ① 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에 따라 매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평가는 평가계획수립, 평가실시, 평가결과의 공개의 절차로 진행된다.

2. 평가 목적

- 대학의 사명과 교육목표의 달성 및 교육품질의 지속적 개선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
- 대학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대학 운영 종합 점검
- 평가지표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평가 체제 정착
-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알 권리 보장 및 욕구 충족

3. 평가 체계

가. 자체평가위원회(5명)

- 구성
 - 총장(위원장), 교학처장, 사무처장, 교수 2명
- 기능(심의, 자체평가 규정 제6조 제5항)
 - 자체평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
 - 자체평가 관련 규정의 제·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
 - 자체평가 지표와 자체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
 - 자체평가 지표 실적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나. 자체평가추진위원회(5명)

- 구성
 - 사무처장(위원장), 교학팀장, 국제교류팀장, 총무팀장, 과장 1명
- 기능(업무수행, 자체평가 규정 제7조 제3항)
 - 자체평가 지표 개발
 - 자체평가 계획과 평가 실시
 -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
 - 자체평가 결과 분석 바탕으로 각 단위 컨설팅 기능 제공
 - 평가위원회와 총장에게 자체평가 결과 보고
 - 그 밖에 자체평가연구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다. 평가영역별 실무위원회(자체평가 규정 제9조)

- 구성(미구성, 둘 수 있음)
- 기능 : 자체평가 업무 보좌

라. 자체평가자문단(자체평가 규정 제10조)

- 구성(5명 내외, 미구성, 둘 수 있음)
- 기능 : 평가 전 과정에 대한 자문 역할

4. 평가 절차 및 추진 경과

가. 평가계획 수립(2021.07.)

- 위원회 구성, 평가영역, 추진일정 결정 등
- 제1차 자체평가위원회 회의(07.15.)
 - 자체평가 기본계획(안) 심의

나. 평가지표 개발(2021.07. ~ 08.)

- 평가 영역별 평가지표 등 결정
- 제1차 자체평가추진위원회 회의(08.19.)
 - 평가 영역별 평가지표(안) 검토

다. 평가 근거 학칙 반영(2021.08.)

- 대학원위원회(08.13.), 대학평의원회(08.26.) 회의
 - 학칙 개정(안) 심의 : 학칙 제5조의2(자체평가) 신설

라. 평가지표별 기초자료 작성(2021.08. ~ 09.)

- 평가지표별 업무담당자 기초자료 작성

마. 평가 실시 및 보고(2021.09. ~ 12.)

- 평가지표별 평가 시행, 결과보고서(안) 작성 및 검토
- 제2차 자체평가추진위원회 회의(11.19.)
 - 대학자체평가 결과보고서(안) 검토·보완
- 제2차 자체평가위원회 회의(12.21.)
 - 대학자체평가 결과보고서(안) 심의
- 2021학년도 대학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최종 보고

바. 평가결과 공개(2021.12.)

- 대학정보공시(자체평가 결과 → 수시항목), 대학홈페이지 등

II. 평가 영역별 평가 지표

1.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(3)

-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
- 교육과정 개선의 다양성
- 성적평가 결과(성적평가 분포)

2.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 (2)

- 학생 선발방법의 적절성
- 학생 선발일정의 적시성

3. 학생 현황 (4)

- 신입생 충원율
- 재학생 충원율(재학률)
- 중도탈락률
- 외국인학생 현황

4. 학생의 진로 현황 (2)

- 진학률(석사학위)
- 취업률

5. 전임교원 현황 (3)

- 전임교원 확보율(편제정원 기준)
- 전임교원 확보율(재학생수 기준)
-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

6. 전임교원의 연구성과 (3)

- 전임교원 1인당 국내 학술게재 논문실적
- 전임교원 1인당 국외 학술게재 논문실적
- 전임교원 1인당 저·역서 실적

7. 학교 및 법인의 회계 (4)

- 등록금 의존율
- 발전기금, 적립금 현황
- 교비회계 중 법인전입금 및 기부금 비율
- 법정부담금 부담률

8.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(3)

- 등록금 책정 기준
- 학생 1인당 교육비
- 교육비 환원율

9. 관할청 시정명령 등 (3)

- 고등교육법 제60조(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)에 해당 사항
- 고등교육법 제61조(휴업 및 휴교 명령)에 해당 사항
- 고등교육법 제62조(학교 등의 폐쇄)에 해당 사항

10. 학교의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 (3)

-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수립 여부
-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적절성
- 교육목표의 적절성

11. 교원 연구, 학생 교육 및 산학협력 (8)

- 교원 교내외 연구비 수혜 실적
-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
- 전임교원/비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
- 학생 장학금 수혜 실적(학생 1인당 장학금액)
- 외국대학과의 교류 현황
- 원격강좌 현황
- 학생지도의 적절성
- 산학협력 현황

12.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(4)

- 직원(사서) 배치 현황
- 도서관자료 확보 현황(학생 1인당 장서수)
- 도서관 예산 현황
- 대학부설연구소 현황

13.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(7)

- 교지 확보율
- 교사(校舍) 확보율
-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및 수익률
- 대학의 조직 현황
- 직원 현황
- 4대 폭력 예방교육(성희롱, 성매매, 성폭력, 가정폭력)
-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현황

※ 평가지표 총수 : 49개

III. 평가 결과 요약

평가영역	평가지표	평가의견	개선방향
1.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	1-1. 교육과정 편성의 적절성 1-2. 교육과정 개선의 다양성 1-3. 성적평가 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인 정관과 학칙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정 편성·운영 ○ 교육과정 개선 필요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시 개편·보완으로 학습 선택권 보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교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교육과정 편성·운영 확대방안 검토
2.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	2-1. 학생 선발방법의 적절성 2-2. 학생 선발일정의 적시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령에 따라 학생의 소질·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시행 ○ 학생의 선발일정은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입학 기회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국인 유학생을 충분히 유치하기 위하여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
3. 학생 현황	3-1. 신입생 충원율 3-2. 재학생 충원율 (재학률) 3-3. 중도탈락률 3-4. 외국인학생 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입생 충원율은 박사 과정은 높으나 석사 과정은 낮음 ○ 재학생 충원율은 매우 낮음 ○ 전체학생 중 외국인 학생의 비중이 높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석사과정 충원율 제고를 위한 대학 홍보 방안 강구 ○ 외국인학생 출신 국가의 다양화
4. 학생의 진로 현황	4-1. 진학률 (석사학위) 4-2. 취업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신학과의 특성과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높아 취업률이 낮은 수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제 취업률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
5. 전임교원 현황	5-1. 전임교원 확보율 (편제정원 기준) 5-2. 전임교원 확보율 (재학생수 기준) 5-3.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편제정원에 맞춰 매년 교원 충원 실시 ○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중임을 감안 외국인 교수 채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학생 편제완성년도에 교원 확보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원 충원 실시

평가영역	평가지표	평가의견	개선방향
6. 전임교원의 연구성과	6-1. 전임교원 1인당 국내 학술게재 논문실적 6-2. 전임교원 1인당 국외 학술게재 논문실적 6-3. 전임교원 1인당 저·역서 실적	○ 전문대학원으로서 전임교원 연구성과 다소 저조	○ 다양한 학술연구비 재원 확보로 교원의 연구활동 적극 지원
7. 학교 및 법인의 회계	7-1. 등록금 의존율 7-2. 발전기금, 적립금 현황 7-3. 교비회계 중 법인 전입금 및 기부금 비율 7-4. 법정부담금 부담률	○ 등록금 의존율 감소 ○ 발전기금, 적립금 미적립 ○ 법인전입금 감소, 기부금 변동이 심함 ○ 법정부담금 부담률 대폭 감소	○ 발전기금, 적립금 확보대책 수립 ○ 수익용기본재산 수익 극대화 방안 마련
8.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	8-1. 등록금 책정 기준 8-2. 학생 1인당 교육비 8-3. 교육비 환원율	○ 학생 등록금 법정 인상률 한도 준수 ○ 학생 1인당 교육비 및 교육비 환원율 증가	○ 학생 등록금 외 법인전입금 또는 기부금 등 재원 증대 방안 강구
9. 관할청 시정 명령 등	9-1. 고등교육법 제60조에 해당 사항 9-2. 고등교육법 제61조에 해당 사항 9-3. 고등교육법 제62조에 해당 사항	○ 학교 설립후 처음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고 지적사항이 일부 있었으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	○ 감사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령과 규정 준수 철저
10. 학교의 발전 계획 및 특성화 계획	10-1.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수립 여부 10-2. 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적절성 10-3. 교육목표의 적절성	○ 2015년 중장기 발전 계획서 수립 후 현재 까지 추가적인 계획 미수립	○ 대학발전계획 및 특성화 계획의 조속한 수립 ○ 기획업무 전담부서 설치 중장기적 검토

평가영역	평가지표	평가의견	개선방향
11. 교원 연구, 학생 교육 및 산학협력	11-1. 교원 교내외 연구비 수혜 실적 11-2.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11-3. 전임교원/비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11-4. 학생 장학금 수혜 실적(학생 1인당 장학금액) 11-5. 외국대학과의 교류 현황 11-6. 원격강좌 현황 11-7. 학생지도의 적절성 11-8. 산학협력 현황	○ 교원 연구비 수혜 매우 저조(교내연구비 전무) ○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 초과 ○ 학생의 장학금 수혜 실적 법정기준 상회 ○ 외국대학과 꾸준한 교류 협약 ○ 원격수업의 원활한 진행 ○ 주기적인 상담 등 학생지도 실시 ○ 직장인의 재교육을 위한 계약학과 설치·운영	○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내외 연구비 확보 ○ 학생 편제정원에 맞는 교원법정기준 충족을 위한 연차적 교원 충원
12.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	12-1. 직원(사서) 배치 현황 12-2. 도서관자료 확보 현황 12-3. 도서관 예산 현황 12-4. 대학부설연구소 현황	○ 도서관 사서 미채용(법정기준 2명) ○ 도서관자료 확보는 최소 기본도서 수는 충족하나, 최소 연간 증가 책 수는 미충족 ○ 대학부설연구소 미설치	○ 사서직 직원 채용 추진 ○ 공간고려 전자책 위주의 도서관자료 확보 방안 강구
13.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	13-1. 교지 확보율 13-2. 교사 확보율 13-3.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/수익률 13-4. 대학의 조직 현황 13-5. 직원 현황 13-6. 4대 폭력 예방 교육 13-7.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현황	○ 교지·교사 확보율,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및 수익률은 법령 상 기준 충족 ○ 업무성격에 따른 부서별 세분화 부족 ○ 직원 정원과 현원에 괴리 존재 ○ 4대 폭력 예방교육은 법령 기준과 방침에 따라 성실히 이수 ○ 수시 규정 제·개정으로 법령 개정 및 업무환경 변화 반영	○ 기획전담부서 설치 중장기적 검토 ○ 전문분야별 직원 충원 확대 ○ 현행 제 규정의 적절성 여부 주기적 점검 및 필요시 개정 추진